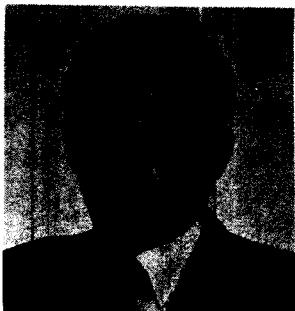


#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白 樂 昇  
(前, 大韓酒類工業協會 會長)

## 目 次

第5章	California州 酒類管理制度 酒事業 -- California州 事業管理法 第9部 酒類事業
CHAP 3	免許 및 免許料
第1節	總 則
第2節	免 許 料
第3節	免許權者의 權利 및 義務
第4節	零售免許
第5節	退役軍人零售免許

## CHAP 3. 免許 및 免許料

### 第1節 總 則

#### § 23300 (免許의 必要한 경우)

어느 누구도 本法에 따라 發行되는 免許에 의하여 認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免許에 根基하여 免許權者가 行使를 認定받거나 또는 行 할 것을 認定받는 權限을 行使하거나 또는 行爲를 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01 (罰 則)

第23300條에 違反하는 者는 輕罪의 罰를 지는 것으로 한다. 但 蒸溜者 免許를 받지 않고 蒸溜者 免許權者가 行使하거나 또는 行 할 수 있는 權限을 行使 또는 行爲를 行하는 者는 重罪의 罰를 지는 것으로 한다.

### 第2節 免 許 料

#### § 23320 (免許料 一覽表)

本法에 따라 發行되는 免許의 種類 및 그 年間 免許料는 다음과 같다.

- |                                    |              |
|------------------------------------|--------------|
| (1) 맥주 製造者 免許                      | ..... 弗 / 年間 |
| (a) 年間 6万 바arel 以下를 製造하는 맥주<br>製造者 | ..... 1,000  |
| (b) 其他 모든 맥주 製造者                   | ..... 828.   |

(2) 와인 酿造免許 또는 와인브랜디 免許 (生産되고 또는 브랜드하는 갈론 數量에 따라서만 計算된다.	
年間 5000갈론 이하 ..... 22.	(22) 店內消費麥酒販賣免許..... 168.
年間 5000갈론을 넘고 2万갈론 까지 ..... 44.	(23)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免許 ..... 168.
年間 2万갈론을 넘고 10万갈론 까지 ..... 82 <sup>50</sup>	(24) 列車를 위한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 免許(各 車輛마다)..... 16.
年間 10万갈론을 넘고 20万갈론 까지 ..... 110.	(25) 漁船團을 위한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 免許(各 船마다) ..... 32.
年間 20万갈론을 넘고 100万갈론 以下 까지 ..... 165.	(26) 船舶을 위한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 免許(各 船마다) ..... 56.
100만갈론을 넘고 각 100만갈론 또는 그 끝수가 追加될때 마다 ..... 110.	(27) 航空機을 위한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 免許(各 定期航空便마다)..... 16.
(3) 브랜디製造者免許..... 168.	(28)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
(4) 蒸溜酒製造者免許..... 276.	人口 4万以上의市內 ..... 580.
(5) 蒸溜酒製造者代理人免許..... 276.	人口 4万未滿에서 2万以上의 市內 ..... 412.
(5a) California 와인釀造者 代理人 免許 ..... 276.	其他의 모든 地域 ..... 360.
(6) 蒸溜器免許 ..... 12.	(29) 季節的事業을 위한 店內消費 全酒類 販賣免許 ..... 달라 / 四半期
(7) 精溜者免許 ..... 276.	人口 4万以上의 市內 ..... 145.
(7a) 蒸溜酒 精溜者 一般免許 ..... 276.	인구4万未滿에서 2万以上의 市內 ..... 103.
(8) 와인精溜者免許 ..... 276.	其他 모든 地域 ..... 90.
((9) 맥주, 와인輸入者免許 ..... 無料	(30) (a) 진정한 클럽을 위한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 ..... 달라 / 年間
(10) 맥주, 와인輸入者一般免許 ..... 56.	(b) (本章第4節에 따라 發行되는)클럽免許
(11) 브랜디輸入者免許 ..... 無料	(c) (本章第5節에 따라 發行되는)退役軍人 클럽免許
(12) 蒸溜酒輸入者免許 ..... 無料	人口4万以上의 市內 ..... 330.
(13) 蒸溜酒輸入者一般免許 ..... 276.	人口4万未滿에서 2万以上의 市內 ..... 248.
(14) 倉庫免許 ..... 12.	其他의 모든 地域 ..... 220.
(15) 通關代理人免許 ..... 12.	(31) 列車 및 寢臺車를 위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 128.
(16) 와인부로카免許 ..... 56.	列車 및 寢臺車를 위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副本 ..... 32.
(17) 麥酒와인 都賣人免許 ..... 56.	(32) 船舶을 위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 332.
(18) 蒸溜酒都賣人免許 ..... 276.	(33) 航空機을 위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 332.
(18a) California 브랜디都賣人免許 ..... 276.	
(19) 工業用알콜取扱人免許 ..... 56.	
(20) 店外消費麥酒, 와인小賣販賣免許 ..... 24.	
(21) 店外消費全酒類小賣免許 ..... 350.	

航空機를 위한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	
副本 .....	10,00
(34) 1000톤 積荷보다 큰 船舶을 위한 店內消費全酒類免許 .....	128.
1000톤積荷보다 큰 船舶을 위한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副本 .....	32.
(35) 1万5000톤 排水톤을 넘는 船舶을 위한 接岸時 真正公開食堂店內消費酒類販賣 免許 .....	360.
(36) 病院, 保養所, 療養所를 위한 特別店內 消費麥酒, 와인販賣免許 .....	56.

#### § 23320.1 (特別免許)

第23320條에 規定하는 免許外에 管理廳은 店內消費全酒類販賣特別免許를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特別免許의 年間免許料는 第23320條에 規定하는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免許料와 同額으로 한다.

#### § 23320.2 (更新料)

第23320條에 規定하는 年間免許料外에 各免許權者는 第23320條에서 指定된 當該免許料의 10%를 年間更新料로서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따라 免許料로서 徵收되는 金額은 第25761條의 酒類管理資金에 編入시키지 않고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編入시키는 것으로 한다.

#### § 23321 (列車, 航空機)

列車를 위한 免許는 州內에 있어서 運行되는 列車內에서 蒸溜酒를 販賣하는 鐵道會社 및 其他의者에 對해 發行되고 그 副本은 蒸溜酒를 販賣하는 各 列車마다 取得하는 것으로 한다.

寢臺車를 위한 免許는 州內에 있어서 寢臺車를 運行하는 寢臺車會社에 對해 發行되고 그 副本은 當該會社가 蒸溜酒의 販賣를 行하는 各 列車마다 取得하는 것으로 한다. 航空機를

위한 免許는 州內를 飛行하는 航空機上에서 蒸溜酒를 販賣하는 航空會社에 對해 發行되고 그 副本은 蒸溜酒를 販賣하는 各 定期飛行便마다 取得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1.6 (船　　舶)

州際 및 國際交易에 關係하는 積載量 1000톤을 超過하는 船舶에 對한 免許는 船上에 有する 蒸溜酒를 販賣하는 州內에서 營業을 行하는 水上輸送業者에 對해서 發行되는 것으로 한다. 免許의 副本은 蒸溜酒의 販賣를 行하는 各 船舶에 對해 取得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1.7 (接岸時 酒類販賣免許)

排水量 1万톤을 넘는 船舶에 對한 真正公開食堂店內消費全酒類販賣接岸時 免許는 75名 以上的 乘船客用寢室을 갖는 第23321.6條에 따르는 副次免許를 發行받은 1万톤 排水量을 超過하는 船舶에 發行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따라 發行되는 免許는 免許의 發行을 받은 郡內에 있어서만 効力を 갖는 것으로 하고 本條에 根基하여 資格을 認定받는 船舶은 複數의 郡에 有する 本條에 따르는 免許의 發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第23397條의 規定에 관계없이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의 免許權者는 酒類의 販賣提供이 乘客서비스에 付隨하는 것이어야 하며 酒類의 購入을 州內에 有해서 再販賣를 위해 酒類를 販賣할 수 있는 都賣免許權者로부터 行할 경우는, 免許가 發行된 郡內에 있어서 接岸中, 免許船舶上의 一般客에 對해 酒類를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上의 權利의行使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一郡에 有する 1年中 100日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法 第5章 第2節(第23815條以下)의 規定에 관계없이 本條의 要件을 充足시키는 申請者에 對해 本條에 따라 發行되는 免許의 件數에 關하여 本條에 規定하는 以外의 提限은 없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있어서 特別히 規定한는 경우를 제외하고 本法의 모든 規定은 本法의 規定이 真正公開食堂에 對하는 店內小費全酒類販賣免許에 通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本條에 따르는 免許에 通用되는 것으로 한다.

但 第23399條에 따르는 出店販賣許可是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에 對해 許可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本條에 規定하는 船舶에 關해 第24042條에 따라 發行되는 副次免許는 第23320條35項에서 規定하는 額의 免許料를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2 (1年末滿期間에 對한 免許料)

第23320條 및 第23321條에 規定하는 免許料는 免許가 發行되는 年의 1月1일부터 免許申請書가 管理廳에 提出된 날까지의 사이의 四半期(3個月)마다 25%를 減額하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申請者が 申請을 行할 경우에 四半期의 다음의 四半期以後까지 免許上의 權利를 行使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趣旨를 明白하게 表示했을 경우에는 免許가 發行되는 年의 1月1일부터 申請書上 特定된 날까지의 사이의 四半期마다 25%를 減額하는 것으로 한다. 麥酒 또는 와인의 店內消費期間限定販賣免許 및 第24045.1條에 依하는 臨時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를 例外하고 年間免許料의 1/2이 되지 않는 免許는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323 (第23960條의 取扱 )

第23322條의 規定은 第23960條에 따라 還付를 認定받는 管理廳의 權限을 制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 § 23325 (와인 製造者免許料)

와인 製造者免許와 같이 免許料가 免許에 依해 生產되는 酒類의 量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는 年의 開始後에 免許의 申請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免許料는 產出量에만 根據하여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7 (와인 製造者의 報告)

와인 製造免許의 保有者は 每事業年度의 終了後 管理廳이 정하는 기간내에 管理廳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年度內의 와인 製造量을 報告하는 것으로 한다. 年度內의 와인 製造量이 納付濟의 免許料에 의해 認定되는 量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第23320條의 規定에 따라 不足免許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8 (免許料의 推計賦課)

免許權者가 第23327條에 의해 義務지워져 있는 報告를 계을리하거나 또는 報告를 拒否했을 경우에는 管理廳은 그의 保有 또는 入手可能한 資料에 根據하여 無報告者的 와인 製造量을 推計하는 것으로 하고 推計 와인 製造量에 根基하여 不足免許料를 計算하고 賦課하는 것으로 한다. 推計는 複數의 年度에 對한 未納付免許料에 關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管理廳은 不足免許料의 通知書를 免許權者에게 送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329 (免許料의 更正)

管理廳이 第23327條에 根基하여 行하는 보고서를 是認하지 않을 경우에는 廳은 보고서, 廳이 보유하는 자료 및 廳의 入手 가능한 자료에 根據하여 免許料의 更正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料의 更正是 複數의 年度에 關하여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料의 更正에 있어서 廳은 過大納付로 되어있는 年度의 免許料와 過少納付로 되어있는 年度의 免許料를 相殺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廳은 免許料의 更正處分에 대해 통지서를 면허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 § 23330 (再更正의申請)

第23328條 또는 第23329條에 따라 면허료의推計賦課 또는 更正이 있었을 경우에는 면허권자는 통지서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再更正의申請을 행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15일 이내에 再更正의申请이 없을 경우에는處分은期間經過에 따라 確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3331 (聽聞)

15일 이내에 再更正의申请이 행해질경우에는廳은 면허료를 再審查하는 것으로하고 免許權者が申請書에 있어서 要求하는 경우에는 口頭에의한 聽聞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聽聞의 기일및 장소에 關한 10日間通知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廳은 그의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期間 聽聞을 繼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廳은 再更正에 있어서 免許料를 增額할수도 減額하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增額하는 경우에는 聽聞의機會 또는 그 以前에 增額의 主張이 廳으로부터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32 (廳의決定하는免許料의納期限)

再更正의請求에 대한 管理廳의決定은決定通知書가 免許權者에 送付되었을때 確定하는 것으로 한다. 廳의處分에 의해決定되는 免許料는 모두 그의處分의確定時에 納期限이 到來하는 것으로 한다.

### § 23334 (全酒類消費販賣免許權者の記帳義務)

店內消費 또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權者は自己가 仕入하는 모든 蒸溜酒를 기록하는 會計帳簿를 기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仕入하는 모든蒸溜酒의 請求書 및 納品書를 保管하는 것으로 한다. 蒸溜酒에 關한 記帳 또는 證票의 보관은廳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前3年에 행해진 蒸溜酒의 購入을 何時라도 提示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되는 것으로 한다.

## 第3節 免許權者の權利 및 義務

### § 23355 (免許上의權利)

本章第2節에 規定하는 免許는 本法의 別段의規定이 있는 경우를 例外하고 또한 州憲法 第30條22項에 따라 免許의 交付를 받은者が 本節에特히 規定하는 權利 및 權限을 免許를 부여받은事業場에 있어서 免許가 부여된 年에 있어서行使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 § 23355.1 (保管 및 引渡)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의 行爲를 行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a) 免許權者에 의한 蒸溜酒의 引渡는 第23383條에 따라 認定되는 경우를 例外하고 賣主의 免許事業場에서 또는 賣主의 免許事業場이 存在하는 郡에 存在하는 倉庫에서 行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b) 蒸溜酒製造者, 蒸溜酒製造者的代理人蒸溜酒一般精溜者 및 精溜者は 他의蒸溜酒製造者, 蒸溜酒製造者的代理人 蒸溜酒一般精留者 精留者 및 蒸溜酒都賣入이 所有하는 蒸溜酒에 대해 保管, 瓶入, 稀釋, 브랜드, 混和, 混合, 맛내기, 着色, 라벨첨부 및 包裝을 할수가 있으며 또한 保管, 瓶入, 稀釋, 混和, 混合, 맛내기, 着色, 라벨첨부 및 包裝을 행한 事業場 혹은當該 蒸溜酒의 所有者的 事業場이 있는同一 郡內에 있는 倉庫로부터 所有者が自己의 免許에 根基하여 引渡를 認定받는 小賣免許業者를 例外한 免許業者에게當該蒸溜酒를 引渡할 수가 있다.

(c) 蒸溜酒製造者 蒸溜酒製造者的代理人

蒸溜酒一般精留者, 精留者 및 蒸溜酒都賣入은 자기에게 발행된 면허에 따라 蒸溜酒

의 引渡를 행하는 것이 認定되어있는  
他의 免許業者의 計算에있어 蒸溜酒의  
保管 및 引渡를 행할수가 있다.  
但 當該免許業者が 他의 免許業者の 代理  
로서 免許權자에 대하여 引渡를 행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除外한다.

#### § 23356 (製造者 또는 와인釀造者)

製造者免許 또는 와인釀造者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에게 다음의 權限을 附與하는 것으로  
한다.

- (a) 免許에 特定되어있는 酒類의 製造者 혹은  
生產者가 되는 것.
- (b) 自己 또는 第三者에 의해 製造 또는 生產  
되었는 것을 不問하고 當該免許에 特定되  
어있는 酒類에 關해 包裝, 精溜, 混合,  
맞내기, 着色, 라벨첨부 및 輸出을 행하는  
것.
- (c) 자기에 의해 또는 自己를 위해 包裝된  
酒類를 當該酒類를 販賣하는 免許를 받고  
있는 都賣人, 製造者, 와인釀造者, 製造者  
代理人, 精留者 및 州外에 있어서의 引渡 또는  
는 사용을 위해 州內에 있어서 當該酒類의  
引渡를 받는자에 대해 販賣하는 것.
- (d) 免許에 特定되어있는 酒類의 倉庫證券을  
取扱하는 것.

#### § 23356.1 (와인釀造者에의한 와인의 試飲)

- (a) 와인釀造者免許는 그 免許를 받은자가  
자기의 製造 또는 瓶入 혹은 免許者를  
위해 製造 또는 包裝된 와인을 와인釀造  
場의 內外에서 試飲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 (b) 本法은 他的 規定에 不拘하고 1970년  
7월 1일전에 자기의 釀造場에 있어서  
자기에 의해 生產 또는 瓶入되었거나  
혹은 자기를 위해 生產 및 包裝된 것 이외

의 州內產 와인을 販賣하고 있었던 와인  
釀造者 및 1970년 7월 1일이전에 前記  
州內產 와인의 試飲을 免許事業場에서  
행하고 있었던 와인釀造者は 免許事業場  
에 있어서 와인의 試飲을 행하고 販賣하  
는 것을 認定받는다.

- (c) 1954년 7월 1일 이전에 와인製造者로서  
免許를 받고 있었던 와인製造業者 및 19  
70년 7월 1일 이전에있어 자기를 위해  
포장되고 자기의 輸入한 와인을 事業場外  
消費를 위해 消費者에게 販賣하고 있었던  
와인製造者로서 자기의 免許事業場에서  
當該와인의 試飲을 행하고 있었던자는  
當該免許場에서 當該와인의 試飲 및 販賣  
行爲를 繼續할 수가 있다.
- (d) 管理廳은 本條를 執行하는데 있어 필요하  
다고 判斷하는 規則을 制定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 § 233562 (家内釀造)

21세 이상의 者에의한 販賣目的以外의 個人用  
또는 家庭用의 麥酒의 製造에 關해서는 어떠한  
免許 또는 許可를 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다.

1世帶의 麥酒總量은

- (a) 當該世代에 2인이상의 成人者가 있을  
경우에는 年間200갈론을
- (b) 當該世帶에 있는 成人者가 1인만의 경우에  
는 年間100갈론을 超過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56.3 (相互의 와인 試飲權)

本法은 他的 規定에 不拘하고 州外의 와인製  
造者は 관리청에 通知하고 승인을 得해서 非營  
利團體가 스폰서가 되는 와인試飲會를 위해  
자기가 제조 및 瓶入한 미국와인을 提供할수가  
있다. 이 權利는 California와인製造者에게 實質

의으로 同等한 相互的의 와인 試飲權을 付與하고 있는 州의 와인製造者에게 付與하는 것으로 한다. 自州가 相互의 와인試飲權을 認定하고 있는趣旨의 自州官吏의 證明書를 通知書에 添付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 § 23356.5 (와인브랜디의 權利)

와인브랜디免許는 免許가 주어지는 者에 대해 다음의 것을 除外하는 와인釀造業者免許에 根基하는 모든 權利를 行使하는 權利를 付與하는 것이다.

- (a) 포도, 딸기류, 기타의 果實의 壓碎, 酿酵 및 와인의釀造
- (b) 第23390條에 規定하는 와인釀造者副次免許를 取得하고 또한 그 發行을 받는것.
- (c) 權利를 付與받은 免許權者以外의 者로부터 또는 當該者에 대해 와인을 購入, 販賣, 取得 또는 引渡를 행하는것.
- (d) 消費者에 대해 와인을 그의 販賣를 행하는 事業場外의 消費를 위해 販賣하거나 引渡하는것.
- (e) 第23358條에 規定하는 店內消費販賣權을 행사하는것.

#### § 23356.6 (와인釀造者 또는 와인브랜디)

本法中 別段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와인釀造者 또는 와인釀造者의 代表理事, 理事, 代理人 및 被用者에 關한 本法中의 規定은 와인브랜디와 더불어 와인브랜디의 代表理事, 理事, 代理人 및 被用者에 準用되는 것으로 한다.

#### § 23356.7 (와인釀造者의 權利)

本法의 規定은 本條의 効力發生時에 와인釀造者免許 또는 同副次免許를 保有하고 있는자의 權利에 대해 遷及的으로 適用되어 여기에 影響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으로하고,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本法

의 規定은 當該와인釀造免許 또는 同副次免許의 更新, 移轉, 讓渡를 禁止하는것이 아닌 것으로 한다.

#### § 23356.8 (와인브랜디에 의한 小賣免許의 保有)

와인브랜디免許權者는 直接 또는 間接으로 小賣免許의 發行을 받고 同免許를 所有 또는 保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하고 小賣免許權者는 直接 또는 間接으로 와인브랜디의 免許의 발행을 받고 同免許를 所有 또는 保有하고 同免許에 대해 權利를 所有 또는 保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은 1968년 2월 2일 이전에 保有하게된 小賣免許 또는 와인브랜디에 대해 혹은 1968년 2월 2일 이전에 小賣免許者에게 讓渡한다는 것을 관리청에 申請하고있었던 와인브랜디免許에 관하여 當該免許를 讓受한 小賣免許權者에 대해 通用되지 않는것으로 한다.

#### § 23356.9 (와인브랜디의 와인試飲)

와인브랜디免許는 와인브랜디의 免許事業場의 内外에 있어 와인의 試飲을 행하는것, 와인試飲를 實施하는것 또는 그의 스폰서가 되는것을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 本條은 1968년 2월 2일 以前 免許된 와인브랜디 또는 1968년 2월 2일 이전에 小賣免許權者에게 權利讓渡를 麾에 申請했던 브랜디免許에 關해 通用되지 않는것으로 한다.

#### § 23357 (麥酒製造者)

麥酒製造者免許의 免許權者는 麥酒의 販賣에 대해 免許를 받고 있는 者에 대해 麥酒를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하고 자기의 免許事業場 또는 免許事業場에隣接한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소유의 事業場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消費者에게 麥酒를 販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麥酒製造免許의 免許權者는 製造者の 免許事業場內의真正公開食堂에 있어서 또는 免許事業場에隣接

한 자기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事業場의 真正公開食堂에 있어서 消費를 위해 消費者에게 麥酒 또는 와인(製造者를 不問)을 販賣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57.1 (州外 麥酒製造者 認可證)

州外 麥酒製造者認可證은 州外에서 製造되는 맥주를 州內의 輸入免許權者에게 出荷하는 權限을 付與하는 것이다. 州外에서 製造되고 合衆國內에서 製造되는 맥주는 州內의 輸入免許權者에 한해 그리고 州外 麥酒製造者認可證의 보유자로부터 取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맥주製造者 1名에 대해 州外 맥주製造者認可證 1통만이 發行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當州의 有效한 免許를 保有하는 california 맥주製造者は 州外 맥주製造者認可證을 取得하지 않더라도 州外의 공장에서 製造되는 맥주를 州內에 出荷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57.2 (州外 麥酒製造者 認可證의 發行)

- (a) 州外 麥酒製造者認可證은 申請者에 의한 下記事項의 書面에 따르는 引受 및 同意에 根據하여 관리청에 의해 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 (1) 申請書, 그의 代理人 및 申請者가 州內에 있어서 관리하는 모든 代理店이 酒類販賣에 關하는 州內의 모든 法律 및 관리청의 規則에 따를 것.
  - (2) 州內에 있어서의 自社製品의 販賣 및 配送에 關해 申請者, 그의 代理人 및 州內에 있어 申請者の 관리하는 代理店의 事業活動에 關한 州内外에 存在하는 모든 帳簿書類 및 記錄을 廳이 檢查하고複寫하는 것을 州内外에 있어 가능하게 할 것.
- (b) 관리청은 免許의 停止 또는 取消의 원인으로 規定되고 있는 원인에 根基하여

또한 sacramento市 또는 관리청이 州外 認可證의 保有者에게 便宜上 認定하는 州內의 他의 郡廳所在地에 있어서 實施되는 聽聞을 經過한 뒤 州外麥酒免許者認可證의 効力を 停止하거나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c) 州外麥酒製造業者認可證의 年間認可料는 관리청이 정하는 것으로하고 그 金額은 관리청에 의한 申請者 調査費用 및 認可證의 發行費用의 合計額에 準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d) 本條에서 정해지는 手數料의 微收額은 第25761條에서 規定하는 酒類管理資金이 아니라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 § 23358 (와인釀造者에 의한 販賣)

와인釀造免許의 免許者는 本法의 他의 規定에 불구하고 또한 와인 및 브랜디를 이들의 販賣를 認定하는 免許의 保有者 및 事業場外에서 消費하는 消費者에 대해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免許事業場 혹은 免許事業場에 近接하여 免許權者에 의하여 또는 免許權者를 위하여 營業되고 있는 免許權者所有의 事業場에 存在하는 本法第23038條에 規定하는 真正食堂에 있어서 事業場內消費를 위해 原產者에 관계없이 모든 와인 및 브랜디를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當該真正公開食堂에 있어서 와인 및 브랜디를 事業場에서 消費하는 食物 및 飲料의 調理에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와인釀造者は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消費者에게 販賣되는 모든 와인의 5% 이상을 포도, 딸기, 또는 其他의 果實을 原料로 해서 자기의 免許事業場에서 實際로 生產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관리청은 權利를 付與하는 것이 公共의 福祉 또는 道德에 反하는 것이라는 充分한 事由가 있다고 判斷했을 경우에는 입구가 학교 또는 教會로부터 200feet 以內에 있는

眞正公開食堂에 있어서 本條에 의해 認定받고 있는 店內消費酒類販賣의 權限을行使하는 權利를 拒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58.2 (와인釀造者 및 브랜디製造者에의한 販賣行爲의 制限)

本條의 他의 規定에 관계없이 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者は 와인 또는 브랜디의 事業場外消費를 위한 販賣가 認定되고 있는 자기의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事業場外消費를 위해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경우 當該免許權者가 生產 또는 瓶入한 와인 또는 브랜디 혹은 當該免許權者를 위해 生산되었거나 또한 生산되고 當該免許權者의 所有하는 브랜드名으로 販賣되고 있는 와인 또는 브랜디만을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기의 免許事業場 또는 其他の 事業場에 대해 맥주및 와인店外消費小賣販賣免許의 발행을 받고 이를 소유 또는 보유하는 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者의 權利는 本條의 規定에 의해 變更되거나 影響을 받는것 아닌것으로하며 또한 이와 같이 解釋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1970년 7월 1일에 發効하는 것으로 한다.

#### § 23358.3 (와인 포도栽培者 貯藏免許)

와인 포도栽培者 貯藏免許는 그의 保有者에 대해 와인釀造免許權者의 事業場에 있어 生產한 포도로부터만든 벌크와인을 貯藏하고 州內에 있어서 와인釀造者, 蒸溜酒製造者 및 食酢製造者에게 販賣하는 權利를 付與하는 것으로 한다.

와인 포도栽培者 貯藏免許의 年間手數料는 56불로 한다. 本條는 1986년 1월 1일까지 効力を 갖으며 同日을 기해 廢止되는 것으로 한다.

#### § 23359 (添加用브랜디의 製造및 販賣)

와인釀造者免許는 免許權者에의한 免許事業場에 있어서의 와인生產에만 사용되는 포도브랜디의 製造를 認定하는 것으로하고 또한 와인의

生産을 위한것에 한해 사용되는 포도브랜디를 와인製造者에게 販賣하는것을 認定하는것으로 한다.

#### § 23360 (브랜디製造者에의한 販賣行爲)

브랜디製造免許權者는 本法의 他의 규정에 不拘하고 브랜디및 와인을 이들의 販賣를 행하는 事業場外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消費者에게 販賣할 수 있는것으로 하고 또한 브랜디및 와인의 販賣를 認定하는 免許의 保有者에 대하여 販賣할 수가 있는것으로 한다.

#### § 23361 (添加用브랜디, 政府用알콜등의 販賣)

브랜디製造免許權者는 포도브랜디, 후르쓰브랜디, 또는 와인알콜을 와인의 生產에 사용하기 위해 合衆國政府를 위한 알콜의 生產 또는 製造를 위해 그리고 事業場外消費를 위한 消費者에의 販賣를 위한 飲料브랜디를 위해서 와인釀造免許權者에게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62 (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者の 店外消費 全酒類 販賣免許의 保有)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의 免許權者는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發行을 받고 이를 保有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店外消費全酒類販免許의 發行은 本法第5章第2節의 關係規定에 따르는것으로 한다. 本法의 規定은 와인釀造 또는 브랜디製造의 免許權者가 1959년 9월 30일에 保有하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를 保有, 更新 또는 移轉하는 權利에 邊及하는 것으로 解釋해서는 안되어 또한 影響을 주는것은 아니다.

#### § 23363 (california州署 原產地로하는 蒸溜酒의 販賣)

當州署 原產地로 하는 蒸溜酒의 製造免許權者

는 蒸溜酒를 販賣하는 免許의 保有者에 대해 蒸溜酒를 販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1959년 通常州議會의 會期에 立法된 本條 改正의 發効日 以後에 發行되는 蒸溜酒 製造 免許에는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本條는 小賣免許權者에의 販賣에 의해 本條에 根基하는 權利를 繼續하여 行사하고 있지 않는 蒸溜酒의 製造者에게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權利外에 蒸溜酒製造免許權者는 브랜디의 販賣를 認定받는 免許保有者에게 브랜디를 販賣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 § 23364 (蒸溜酒製造者에의한 蒸溜酒의 小賣人에의 販賣)

蒸溜酒都賣人 또는 精留酒로부터 店內 또는 店外消費小賣人에의 蒸溜酒의 販賣 및 引渡에 關한 本法上의 모든 規定 및 蒸溜酒의 販賣에 대한 課稅에 關한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第2部과-트 14의 모든規定 그리고 蒸溜酒稅 課稅手續에 關한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第2部과-트 14의 모든 規定은 本法에의해 認定받는 州內에서 生產되는 蒸溜酒의 販賣를 小賣人에게 대해 行하는 蒸溜酒製造者에 適用하는것으로 한다.

#### § 23365 (蒸溜酒에의한 利益配分)

第23405.1條에 根基하여 登記를 義務지워져있거나 또는 第23405.條에 根基하여 蒸溜酒의 製造를 行하는 것을 免許받고있는 株式會社 또는 有限責任파-트나 簡은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係會社 또는 子會社等을 통해 配當으로서 株主에게 혹은 出資의 反戻 또는 利益配分으로 有限責任파-트나에 蒸溜酒를 配分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製造者, 蒸溜酒製造者代理人, 精留者 또는 都賣人免許의 保有者에게 酒類를 販賣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66 (蒸溜酒製造者代理人)

蒸溜酒製造者代理人免許는 다음의 行위를 認定하는 것이다.

- (a) 일반또는 私用倉庫에 蒸溜酒를 보유하는 것.
- (b) 蒸溜酒의 輸出을 行하는것.
- (c) 自己 또는 蒸溜酒製造者, 製造者代理人, 精留者혹은 都賣人의 計算에 있어서 蒸溜酒의 稀釋, 브랜드, 混和, 맞내기및 着色을 行하는것.
- (d) 自己 또는 他者에의해 稀釋, 브랜드, 混和, 맞내기, 또는 着色되는가 아닌가에 不拘하고 蒸溜酒를 蒸溜酒製造者, 精留者 또는 蒸溜酒都賣人免許의 保有者에대해 包裝, 販賣, 또는 引渡하는것.

蒸溜酒製造者代理人免許의 資格要件으로서 實際로 蒸溜酒의稀釋, 브랜드 또는 瓶入業務에 從事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한다.

#### § 23366.1 (蒸溜酒製造者에의한 特定小賣人을 위한 勸誘行爲)

蒸溜酒製造者 또는 그의 대리인은 特定의 小賣人을 통하여 多量의 蒸溜酒를 購入할것을 消費者에게 勸誘해서는 안되는것으로 한다. 本條는 消費者에의 販賣를 認定하는 免許를 保有하는 蒸溜酒製造者 또는 그의 대리인이 當該免許에따라 消費者에게 酒類의 販賣를 行하는것을 禁止하는 것은아니다.

#### § 23366.2 (州外 蒸溜酒出荷 業者認可證에 따르는 權利)

州外 蒸溜酒出荷 業者證明書는 州外에서 製造되는 蒸溜酒를 州內의 輸入, 免許權者에게 出荷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州外에서 製造되는 蒸溜酒는 輸入免許權者에 의해 州外蒸溜酒 出荷業者認可證의 保有者로부터만 取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州外의 蒸溜酒 出荷業者에 대하여 1件의 州外蒸溜酒 出荷業者證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66.3 (州外蒸溜酒 出荷業者認可證의 發行)

- (a) 州外 蒸溜酒 出荷業者認可證은 申請者가 다음사항을 書面에 의해 引受, 同意함에 따라서 관리청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1) 申請人, 그의 代理人 및 申請인이 관리하는 州內의 대리점이 酒類의 販賣에 關하는 州內의 모든 法令 및 관리청의 規則을 遵守할것.
  - (2) 州內에 있어서의 製品의 販賣 및 配送에 관하여 신청자 그의 대리인 및 신청인이 관리하는 州內의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관하는 州内外에 있는 모든 帳簿, 記錄 및 書類를 California 州의 內外에 있어서 관리청이 檢查 및 複寫하는것을 가능하게 할것.
- (b) 관리청은 免許의 停止 및 取消의 사유가 있을경우 Sanfrancisco 또는 廉이 州外蒸溜酒 出荷業者認可證의 보유자의 便宜라고 判斷되는 군청소재지에 있어서 聽聞을 행한후 同認可證의 효력을 停止 또는 取消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 (c) 州外蒸溜酒 出荷業者 認可證의 年間手數料는 廉이 결정하는 것으로하고 廉에 의한 申請者調查費用 및 同認可證의 發行費用에準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d) 本條에 정하는 手數料의 徵收額은 第2 5761條에 정하는 酒類管理資金에 編入하지않고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 § 23366.5 (와인 또는 브랜디의 注文의 勸誘)

와인釀造者免許, 브랜디製造者免許, California 와인釀造者代理人免許, 맥주및 와인都賣人免許 또는 蒸溜酒製造者代理人免許는 州內에서 生產 및 製造되는 와인 또는 브랜디로서 當該免許權者가 自己의 면허에 根基하여 他의 免許權者의 대리인로서 他의 免許權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와인 또는 브랜디 혹은 그의 쌍방의 注文을 勸誘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 23367 (蒸溜器免許)

蒸溜器免許는 免許의 발행을 받은자가 면허가 발행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면허에 표시된수의 종류기를 소유또는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 23368 (精留者免許)

精留者免許는 면허의 발행을 받은자가 歲入 및 課稅에 關하는 法律第2部 파-트14에 根據하여 과세되는 稅의 納付필의 蒸溜酒 및 와인을 稀釋, 브랜드, 精留, 混和, 맞내기및 着色하는것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가 稀釋등을 행한 제품을 包裝, 라벨添付, 수출 및 蒸溜酒의 販賣를 인정받고 있는 면허의 보유자에게 販賣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 23368.1 (蒸溜酒 一般精留者免許)

蒸溜酒 一般精留者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에 대해 蒸溜酒의稀釋, 브랜드, 精留, 混和, 맞내기 및 着色을 행하는것.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가 稀釋등을 행한 蒸溜酒를 包裝, 라벨添付, 輸出과 더불어 蒸溜酒製造者, 同 代理人 蒸溜酒都賣人, 蒸溜酒一般輸出人 및 蒸溜酒一般精留者에게 販賣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면허는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全 酒類小賣 販賣免許權者에게 權利를 가지고있는 자에 대해

서는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면허의 發行件數는 第23820條의 規定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면허는 제조자, 同 대리인 수출인 또는 都賣業者免許가 발행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同一人에 대해서 발행되느냐 제3자에게 발행되느냐를 不問하고 有效한것으로 한다. 이 면허의 手數料는 276弗로하고 酒類管理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 23369 (精溜免許權者의 瓶入義務)

精留者免許의 取得資格을 얻기위해서는 면허의 발행 또는 更新時 혹은 그후 30일이전에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는 蒸溜酒의 瓶入業務에從事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자기가 소유하는 蒸溜酒의 比率은 자기의 瓶入을 행하는 全 蒸溜酒의 50%이상을 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70 (製造者 代理人에 依한 瓶入行爲)

第23368條 및 第23369條의 規定은 他의 製造者代理人, 精溜者, 都賣人 또는 製造者만이 소유하는 蒸溜酒의 瓶入業務에 從事하는 者에게 蒸溜酒製造者代理人의 免許를 발행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71 (都賣人을 兼하는 精溜者)

蒸溜酒都賣人의 機能까지 소유하고있는 精留者는 蒸溜酒都賣人免許의 소유자에게 適用되는 本法의 모든 規定을 遵守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 § 23372 (와인精溜者免許)

와인精溜者免許는 그 발행을 받은자가 歲入 및 과세에 關한 法律第2部파-트 14에 의해 과세되는 稅의 納付濟 와인의稀釋, 브랜드, 精溜, 混和, 맛내기, 또는 着色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가 稀釋을 행한 와인을 包裝, 라벨添付, 수출과 와인의 販賣를 인정하는 廳發行의 면허를 보유하는 자에게 販賣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와인 精溜者免許의 보유자는 輸入者免許, 蒸溜酒製造者免許 또는 同 대리인면허를 신청하고 이것을 보유할 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면허는 小賣販賣免許의 보유자에대해 발행되거나 또는 同人에 의해 보유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73 (california와인 製造者代理人免許)

California와인 製造者代理人免許는 다음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a) california에서 生產된 와인 및 브랜디를 일반 또는 사용창고에 보유하는것.
- (b) 上記 와인및 브랜디를 자기의 계산으로 都賣人에게 販賣하는것 또는 와인釀造免許者の 계산에의해 勸誘하고 販賣하는 것.
- (c) 자기의 勸誘한 注文에대한 支拂에 關하여 와인釀造者를 위해 請求하고 그의 지불을 받는것.
- (d) 와인釀造者가 第23356.1條 第25503.1條, 제25503.2條, 第25503.3條, 第25503.5條 및 第25503.9條의 規定에 根基하여 행하거나 또는 提供할 수 있는 써비스를 자기가 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와인釀造者를 위해 행하거나 또는 提供하는것.

#### § 23373.1 (都賣人에의한 와인釀造者代理人免許의 保有)

都賣人免許의 보유자 또는 소매면허의 보유자는 California와인 製造者代理人면허를 보유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本條의 發効日이 전에 20年間 이상의 기간에 주로 와인釀造者를 위한 配送者였던 都賣人면허의 보유자는 맥주, 와인都賣人면허및 蒸溜酒都賣人免許와같이 本면

허를 계속하여 보유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373.2 (와인 製造者 및 브랜디 製造者の代理人)**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는同一의 California 와인 製造者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3373.3 (와인 製造者代理人에 依한 價格의 提示)**

California 와인 製造者 대리인은 소매인 및 소비자에 대한 와인 및 브랜디의 가격을 제시 申告 및 確定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자기가代理하는 와인 製造者 및 브랜디 製造者를 위해契約을 締結하고 履行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한다.

**§ 23373.4 (California 와인 製造者代理人의 權限)**

California 와인 製造者 대리인 면허는 그의 보유자에 대해 대리권을 授權한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の 대리인으로서의 配送을 행하고 있는 와인 또는 브랜디에 관하여 見本을 提供하는 것. 와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配布하는 것 및 宣傳用資料(소매인용 자료 및 소비자용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3373.5 (California 와인 製造者代理人의 違反行爲)**

본법의 規定은 California 와인 製造者 대리인이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를 위해 행위할 때 違反行爲를 犯했을 경우 관리청이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에 대해 懲戒處分을 행하는 것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 23374 (輸入者免許)**

輸入者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가 면허에

명시되는 酒類의 輸入者가 되는 것. 酒類의 輸出을 행하는 것 및 輸入한 酒類를 輸入者免許以外의 免許權者인 자기의 계산에 移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3374.5 (蒸溜酒輸入者 一般免許)**

蒸溜酒輸入者 一般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가 蒸溜酒의 輸入者가 되는 것과 蒸溜酒를 蒸溜酒製造者, 同대리인 蒸溜酒都賣人, 精溜者 그리고 蒸溜酒 一般輸入者에게 販賣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3374.6 (麥酒 및 와인輸入者 一般免許)**

맥주 및 와인輸入者 一般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가 맥주 또는 와인의 輸入者가 되는 것과課稅事務 맥주 또는 와인을 맥주製造者, 와인 製造者, 맥주 및 와인 都賣人, 와인 精溜者 그리고 맥주 및 와인 一般輸入者 면허권자에게 販賣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3375 (一般倉庫業免許)**

一般倉庫業免許는 他의 면허권자의 계산에 있어서 酒類를 保管(合衆國關稅保稅倉庫, 合衆國內國歲入 保稅倉庫 및 合衆國保稅 와인 倉庫에의 保管을 包含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3375.5 (蒸溜酒輸入者 一般免許發行上의 制限)**

蒸溜酒輸入者 一般免許는 店內 또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에 대해 直接 또는 間接의 으로 權利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3375.6 (맥주 및 와인輸入者 一般免許發行上의 制限)**

맥주 및 와인輸入者 一般免許는 直接 또는 間接의 으로 小賣免許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에게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小賣免許는 맥주 또는 와인輸入者一般免許權者에게는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376 (通關取得人免許)

通關取得人免許는 合衆國內國歲入 保稅地 또는 合衆國關稅保稅地에 持入되는 酒類를 免許輸入者에게 引渡하는것 그리고 同 酒類를 輸出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通關取扱人免許의 보유자는 合衆國內國歲入保稅地 또는 合衆國關稅保稅地에 持入되는 酒類의 引渡를 받고 이를 보유하고 수출하는 것 그리고 면허수입자에게 引渡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면허는 또한 수출을 위해 맥주제조자 또는 와인釀造者로부터 取한 酒類의 보유 및 수출을 인정하는 것이다.

### § 23377 (와인取扱 仲介人免許)

와인取扱 仲介人免許는 그의 발행을 받은자가 州內 또는 州外의 再販賣를 위해 와인을 수입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자를 위해 와인을 購入하는 것과 州內에 있어서 와인을 販賣하는 것을 免許받고 있는 小賣免許權者以外의 者를 위해 와인을 販賣하는것에 관해 取扱仲介人으로서 手數料 또는 報酬를 받고 행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와인取扱仲介人은 州內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으로 와인을 購入 또는 販賣하거나 와인에 대한 權利를 取得 또는 讓渡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름으로 와인의 引渡를 받거나 보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와인取扱仲介人은 州內에 있어서 와인의 販賣免許를 付與받은 小賣免許權者 以外의 者로부터 사전에 진정한 授權을 받는 일 없이 와인의 販賣의 신청을 행하거나 販賣의 신청에 同意하거나 또는 販賣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와인取扱仲介人은 再販賣를 위해 와인을 購入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州內 또는 州外의 者로부터 사전에 진정한

授權을 받는 일 없이 와인의 購入의 신청을 하거나 購入에 동의하거나 購入의 신청에 同意하거나 또는 購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와인의 取扱仲介人免許에 根基하여 付與되는 權利의 行사는 관리청이 필요하고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規則 및 條件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23378 (都賣人免許)

都賣人免許는 면허에 명시되는 酒類를 酒類의 판매를 인정하는 管理廳發行免許의 보유자에 대해서만 販賣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同주류를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 23378.1 (california 브랜디 都賣人免許)

(a) California 브랜디 都賣人면허는 맥주및 와인都賣人면허 보유자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것으로 하고 그의 발행을 받은자(以下本條에 있어서 면허권자라고 한다)가 다음의 조건하에서 california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브랜디의 판매를 인정하는 면허를 보유하는 자에게 판매하것. 그리고 同브랜디를 수출하는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1) 同免許權者는

(I) 취득原價 10만불이상의 california 브랜디를 일시에 보관하는 자기소유의 또는 貸借한 倉庫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반창고내에 自己使用을 위한 보관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者로 한다.

(II) 取得原價 10만불이상의 california 브랜디를 常時 上記倉庫스페이스, 또는 보관스페이스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權者가 複數의 면허사용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허권자는 1免許事業場에 한하여 취득원가 10만불이상의 california

브랜디 보관용의 스페이스 및 在庫를 보유하는 것을 의무지워지는 것으로 한다. 기타의 면허사업장에 관해서는 취득원가 3만불이 상의 California 브랜디 보관용의 스페이스 및 在庫를 보유하는 것을 의무지워지는 것으로 한다. 本項에 根基하여 보유를 의무지우는 California 브랜디는 면허권자自體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委託에 의해 보유하는 것 또는 特定의 면허권자에게 販賣하는趣旨의 事前契約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 이 면허권자는 소매인에게 일반적으로 California 브랜디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의 小賣人에게 限定하여 販賣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California 브랜디 都賣人的 免許事業場이 있는 郡에 있어서의 25%의 小賣人에게 販賣하고 있는 면허권자 또는 12個月內의 小賣人에의 California 브랜디의 販賣總量이 10케이스이하 個別販賣量의 50%이상을 占하는 免許權者は 小賣人에게一般的으로 販賣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 (3) 이 免許權者は 1와인釀造者の 生產 또는 瓶入을 행한 혹은 同와인釀造를 위해 生產 및 包裝된 그리고 同와인釀造者の 所有 또는 관리하는 브랜드로 販賣되고 있는 California 브랜디의 一種만을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4) 이 면허권자는 자기의 併有하는 맥주 및 와인都賣人免許에 根基하여 면허권자가 取得하는 와인釀造者の 一連의 California 와인 製品의 在庫를 保有하고 이것을 小賣人에게 販賣하는 申請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項上 「一

連의 製品」이란 特定의 라벨하에서 販賣되는 모든 種類의 와인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 (b) 발행되는 California 브랜디 都賣人免許의 수는 郡內發行可能免許數에 關하는 管理廳規則에 의해 制限되지 않는 것으로하고 同免許는 郡內發行可能蒸溜都賣人免許數를 確定하기 위해 사용되는 廳의 算式에 包含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 (c) California 브랜디 都賣人免許 手數料는 年 276불로하고 酒類管理資金에 編入시키는 것으로 한다.

#### § 23379 (麥酒 및 와인 都賣人免許)

맥주 및 와인 都賣人免許는 州 保健省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와인의 라벨링, 瓶入 또는 包裝을 行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맥주 및 와인 都賣人免許는 消費者的 持參, 提供 또는 販賣하는 容器에의하여 와인을 消費者에게 販賣하거나 또는 引渡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 § 23380 (工業 알콜 取扱人免許)

Industrial 알콜 取扱人免許는 飲料의 消費目的을 위한 것이 아니라 取扱 및 去來, 職業 또는 工業에 使用하기 위해 1갈론을 超過하는 包裝濟의 非變姓 에칠알콜을 販賣하는 것 을 認定하는 것이며 또한 非變姓 알콜의 輸入 및 輸出을 認定하는 것이다.

#### § 23381 (酒類倉庫證券의 買賣)

製造者, 와인釀造者代理人, 精溜者 또는 都賣人免許는 免許權者が 다음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a) 免許權者が 販賣를 인정받고 있는 酒類의 倉庫證券을 倉庫證券上의 酒類를 販賣하

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他의 製造者, 와인釀造者代理人, 精溜者 또는 都賣人免許權者와의 사이에 있어서去來하는 것.

(b) 他州에 수출하기 위해 倉庫證券의 California產브랜디를 州內의 內國歲入保稅倉庫에 보관할 목적으로 同倉庫證券을 브랜디를 취급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他州의 면허권자에게 販賣하는 것. 本條의 規定은 酒類倉庫證券의 取得이 1941년 5월 1일 以前일 경우 以上에서 規定하는 者以外의 者가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證券上의 酒類의 販賣를 免許받고 있는 製造者, 와인釀造者代理人, 製造者代理人, 精溜者 및 都賣人에게 酒類倉庫證券을 販賣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82 (별크 蒸溜酒의 販賣)

賣買契約의 申請또는 申請의 同意의 시점에 있어서 1갈론을 초과하는 容器에 들어있고 所有權이 倉庫證券으로 되어있는 蒸溜酒의 販賣의 申請또는 申請에의 同意는 倉庫證券의 販賣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 § 23383 (倉庫保管中の 酒類의 讓渡, 州外使用酒類의 引渡)

製造者, 와인釀造者, 製造者代理人, 輸入者, 精溜者 또는 都賣人면허는 또한 면허에 명시되는 酒類가 州內의 어디엔가의 地域에 있는 免許一般倉庫, 合衆國關稅保稅倉庫, 合衆國內國歲入保稅倉庫 또는 合衆國와인 保稅倉庫내에 保管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他의 特別한 면허를 받지 않고 이것을 면허를 받은 他의 製造者, 와인釀造者, 製造者代理人, 輸入者, 精溜者 및 都賣人에게 讓渡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이들의 免許는 면허에 명시하는 酒類를 관리청이 정하는 手續에 따라 州外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州內에서

當該酒類의 引渡를 받는자에게 販賣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 § 23384 (聯邦政府 管理地域等에 있어서의 酒類의 販賣)

면허를 받은 맥주製造者, 와인釀造者, 브랜디製造者, 精溜者 또는 都賣人은 면허에 根基하여 행사되는 其他의 權利에 더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免許에 明示되는 納稅畢의 酒類를 軍事特別區域, 國立公園 또는 退役軍人居住區로서 合衆國政府가 管理하는 州內地域 California州 退役軍人居住區 및 인디안居住區의 固定事業所 또는 居住地를 갖는 無免許者에 대해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85 (工業用 蒸溜酒의 販賣)

蒸溜酒製造者, 브랜디製造者 및 精溜者免許는 飲料用이아닌 職業또는 工業用에 사용하는 1갈론을 超過하는 면허에 표시된 包裝濟의 蒸溜酒를 販賣하는 것을 인정받는다.

#### § 23386 (見本의 提供)

製造者, 와인釀造者, 製造者代理人, 輸入者 또는 都賣人免許는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면허에 의해 販賣를 인정받고 있는 酒類의 見本을 提供하는 것을 인정받는다. 小賣免許는 無料의 景본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 23387 (州外에서 使用하는 酒類의 引渡)

都賣人 또는 精溜者免許에 根基하여 행사되는 權利外에 都賣人 또는 精溜者는 자기의 면허에 표시된 酒類를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賣買의 日字부터 90日 以內에 州外에 引渡 또는 州外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州內에서 酒類의 引渡를 받는자에게 販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88 (車輛에의한 麥酒의 販賣)

免許를 받은 麥酒製造者 또는 都賣人은 免許販賣場에 있어서의 麥酒의 販賣外에 麥酒를 自己가 運轉시키는 車輛 또는 트럭으로 麥酒의 販賣를 인정받는 免許權者에게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89 (麥酒製造者의 支店免許)

免許를 받은 麥酒製造者は 製造場으로부터 떨어진 地域에 設置되고 있는 支店에 있어서 麥酒를 販賣하고 引渡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支店에 있어서 또는 支店을 起点으로 하여 製造以外의 모든 免許上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관리청은 請求에 根基하여 同等의 期間에 대한 麥酒 및 와인都賣人免許의 免許料에相當하는 支店免許料의 納付를 받고 免許製造者가 指定하는 支店의 設置 및 運營을 인정하는 製造者の 原免許의 副本(副次免許)을 麥酒製造者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副次免許는 신청을 받았을 경우 即刻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副次免許의 발행에 대한 異議申立이 관리청에 受理되었을 경우에는 異議申立은 製造者免許權者에 대한 異議로 간주하고 審查 및 聽聞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副次免許의 발행일로부터 30일간이 經過할 때까지의 사이에는 麥酒의 小賣販賣는 本條에 根基하는 副次免許가 발행된 支店에서 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90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の 支店免許)

免許를 받은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は 免許事業場에 있어서의 免許上의 權利行使外에 製造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地域에 設置된 支店 또는 倉庫 혹은 合衆國와인 保稅倉庫에 있어서 또는 이를 據點으로 해서 生產되는 製造, 真正食堂에 있어서의 店內消費를 위한 와인

또는 브랜디의 販賣 및 消費者的持參, 提供 또는 賣却하는 容器에 의한 消費者에의 와인의 販賣 또는 引渡를 除外한 모든 免許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관리청은 신청에 根基하여 와인 製造 또는 브랜디 製造場以外의 場所에 관해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原免許의 副本(副次免許)을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副次免許는 同免許가 발행되는 場所에 있어서 와인 製造者 또는 브랜디 製造者가 指定하는 支店 또는 倉庫 혹은 合衆國 와인 保稅倉庫를 設置하고 이를 運營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와인 製造者免許의 各副本의 手數料는 同等期間의 麥酒 및 와인 都賣人免許대해 納付되어지는 免許料에相當하는 額으로 하고 브랜디 製造免許의 各副本手數料는 原免許에 대해 納付되어지는 免許料에相当하는 額으로 한다.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와인 製造者免許 또는 브랜디 製造者免許의 副次면허는 申請후 即時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 副次免許의 發行에 관한 異議申立이 관리청에 의해 受理되었을 경우에는 免許權者에 대한 異議로 간주하고 審查 및 聽聞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副次免許의 發行일로부터 30日이 經過할 때까지의 期間에는 本條에 根基하여 副次免許가 발행되는 支店에 있어서 와인 또는 브랜디의 小賣販賣를 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他의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관리청은 1981년 1월 1일 이전에 複數의 와인 製造者免許를 보유하는 者에 대해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와인 製造者의 原免許를 基礎로 해서 발행되어 있는 副次免許를 1981년 1월 1일 이전에 嘗該者가 보유하는 他의 와인 製造者原免許로 變更하는 것을 許可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嘗該免許權者는 原免許로 變更되는 副次免許의 原免許를 抛棄하는 것으로 한다. 本項은 1981년 1월 1일 이전에 免許權者가 保有하고 있었던 件數이상의 副次免許를 取得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 23390.5 (免許를 받은支店)

- (a) 本條에 있어서 사용하는 「免許를 받은支店」이란 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者の 免許製造場으로부터 떨어진 地域에 있는 支店 또는 倉庫혹은 合衆國와인 保稅倉庫로서 副次免許가 발행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b) 第23358條 第23360條 및 第23390條의 規定에 關係없이 免許와인釀造者 또는 브랜디製造者は 하나를 넘는 免許支店事業場에서 販賣 또는 와인 試飲이 행하여지는 事業場以外이 場所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와인 또는 브랜디를 消費者에게 販賣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遷及의인 것은 아니고 또한 遷及의으로 解釋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本法의 他의 規定에 불구하고 本條의 發행일에 存在하는 副次免許 또는 그의 更新免許 혹은 그의 移轉 또는 讓渡免許에 따라 免許를 받은 支店 또는 이를 免許支店의 場所에 免許權者에 의해 設置되는 免許를 받은 支店에 있어서의 關係되는 販賣를 禁止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關係되는 販賣數量을 制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하며 나아가 와인試飲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91 (支店에있어서의 違反行爲)

本法 또는 관리청의 정하는 規則에 違反하는 행위가 지점에 있어서 행사를 인정받는 免許上の 權利의 行使에 있어서 행해지고 違反行爲가 免許權者에 관하는 관리청의 調査, 聽聞 또는 決定對象事業이 될 경우에는 청은 그 規則을 作成하고 또는 결정을 함께 있어서 違反行爲가 特定支店의 運營에 관해서만 행해진것이고 製造 또는 生產 그리고 製造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닌것을 確定할때에는 製造場에 있어서의

면허상의 權利또는 當該免許의 停止, 取消또는 制限을 행하지않는 것으로하고 本법에 根基하여 認定받는 廳決定의 適用範圍를 違反行爲를 發生하게한 特定의 副次免許및 事業場에 限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3392 (製造場에 있어서의 違反行爲)

本法 또는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違反하는 行爲가 麥酒의 製造또는 와인의 釀造가 행하여지는 事業場에 관하여 행해졌을경우 관리청은 違反行爲에 관하는 規則을 作成하거나 또는 決定을 내리는데있어 이 決定을 釀造또는 生產事業場에 대한 免許및 違反行爲가 행하여진 事業場에 있어서 免許權者에 의해 행하여지는 製造, 釀造, 輸入, 輸出, 包裝, 라베링, 都賣人에의 販賣또는 小賣人에의 販賣等의 特定의 機能에 대하는 것 또는 관하는 것에 限定하는 것으로 한다. 支店에 대하는 副次免許는 違反行爲가 支店에 關與하지 않는한 廳決定에 의해 違反을 理由로해서 影響을 받거나 또는 制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393 (麥酒및 와인 店外消費販賣免許)

麥酒및 와인 店外消費小賣免許는 再販賣를 目的으로 하지않고 消費者만에게 대해 販賣하는 事業場以外의 場所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하여 容器에들어있는 麥酒및 包裝된 와인을 販賣時에 52갈론以下の 量을 販賣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 § 23394 (店外消費 全酒類販賣免許)

店外消費 全酒類販賣면허는 第23393條에 規定하는 權利를 包含하여 第24045.1條에 根基하여 發행되는 臨時 全酒類販賣免許權者에 대해 販賣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再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않고 消費만 하는 것에 대해 販賣事業場以外의 場所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하여 蒸溜酒를 販賣

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本條에 根基하여 販賣를 認定 받는 蒸溜酒의 標準容量은 聯邦酒類行政法(合衆國法典 第27卷 第201條 以下) 및 그의 改正法에 따라 정해지는 規則에 의해 設定되는 標準에 모든 면에 있어서一致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 § 23394.5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權者의 事業場)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上의 權利는 第23106條에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免許權者에 의해 客室 또는 各建物이 近接하고 客室 또는 各建物간의 出入이 公設또는 私用의 道路 路地 또는 步道를 使用하는 일이 없으며 一般人의 利用에 適合하며 可能한 경우를 除外하고 一室 또는 一建物을 超過하는 곳에서 行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95 (混成酒→(리큐르) 等의 販賣)

本法의 어떠한 規定도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權者가 包裝된 0.5파운드未滿의 課稅上蒸溜酒로 分類되는 混成酒 또는 芳香, 맛내기 혹은 醫藥用 調合酒를 販賣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96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어떠한 것인든 販賣를 행하는 事業場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免許에 明示하는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는 것이다. 麥酒以外의 酒類는 事業場이 第23038條 第23038.1條 또는 第24045.1條에서 規定하는 基準에 따르게 되어 있지 않는 한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가 발행되어 있는 어떠한 真正公開食堂에 있어서도 販賣하거나 또는 提供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23396.5(開封된 와인瓶의 諸屬)

他의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免許에 關聯하여 真正食堂을 보유하고 있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權者는 瓶入의 와인을 購入하고 그 一部를 消費한 者가 事業場으로부터 一部消費의 와인瓶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認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 § 23397 (列車, 船舶및 航空機에 있어서의 酒類의 提供)

列車, 船舶및 航空機에 대해서 評行되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에 根基하여 列車, 船舶 및 航空機內에 있어서 乘客 및 勤務外의 職員에 대해서만 酒類를 提供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漁船에 대한 店內消費麥酒販賣免許에 根基하여 接岸時를 除外한 漁船上에 있어서 麥酒를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98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權者에 의한 混成酒等의 購入)

本法의 어떠한 規定도 課稅上 蒸溜酒로 分類되는 包裝되고 0.5파운드 未滿의 混成酒 또는 其他의 芳香, 맛내기 혹은 醫藥用 調合酒를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權者가 購入하거나 또는 保有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 23399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 仕出店許可)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는 販賣事業場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하여 麥酒, 와인 및 蒸溜酒의 販賣를 認定하는 것이다.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 클럽免許 또는 退役軍人 클럽免許의 免許權者は 관리청에 대해 仕出店許可를 申請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에 대한 이 許可是 관리청이 承認하는 州內에서 開催되는 集會, 스포츠大會, 見本市場, 피크닉 社會的會合 또는 이들과 類似한 이벤트에 있어서 會場內에서 消費되는 麥酒, 와인 및 蒸溜酒의

販賣를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클럽면허 또는 退役軍人 클럽免許에 대한 이 免許는 免許가주어 진 클럽 施設內에서 開催되는 上記이벤트에 있어서 會場內에서 消費되는 酒類의 販賣를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은 관리청이 第24045條에 根基하는 特別免許 또는 第24045.1條에 根基하는 臨時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를 發行하는 것을 制限하는 것은 아니다. 上記 各 이벤트에 있어서의 上記販賣의 承認은 관리청이 정하는 規則에 따라 발행되는 個別出店 許可로서 관리청으로부터 取得하는 것으로 한다. 個別出店 許可是 10불이하의 許可手數料의 納付를 하고 發行하는 것으로 하며 手數料는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上記 이벤트에 있어서 免許權者는 自己의 免許에 의해 認定 받는 權利만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店內消費酒類販賣事業場에 관하는 모든 法律規定을 遵守하는 것으로 한다. 法律에의 違反行爲는 違反行爲가 免許事業場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같이 免許權者의 免許또는 許可의 停止 또는 取消의 事由가되는 것으로 한다.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에 대한 仕出店許可 手數料는 年100불로하고 클럽免許또는 退役軍人클럽免許에 대한 仕出店許可 手數料는 第23320條에서 規定하는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 手數料와 同額으로 하고 免許權者の 免許更新時에 每年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仕出店許可是 免許의 一部로서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399.1 (免許를 必要로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모든 條件이 充足되어있을 경우에는 酒類의 提供 其他의 處分을 위한 免許또는 許可是 必要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酒類의 販賣行爲가 행해지지 않는것.
2. 酒類의 提供, 消費 또는 其他의 處分을 할때 施設이 일반에게 公開되어 있지 않을것.
3. 酒類의 提供, 消費 또는 其他의 處分을 위한

施設이 設置되어 있는것이 아닌것.

但, 本條의 規定은 어느것이든 酒類管理法의 規定에 違反하는것을 許容하는 것으로 解釋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399.2 (店内消費 全酒類販賣特別免許上의 制限)

店内消費 全 酒類販賣特別免許가 發行되는 施設은 第23037條에서 規定하는 모든 要件을 充足하는 團體에 의해 金錢的利益을 위해 運營되지 않거나 혹은 財產이 會員에 의해 所有되어야하는 條件으로 運營하거나 혹은 두가지 條件을 除外하고는 當該要件의 모든것을 充足하는 團體에 의해 클럽으로서만 運營할 수가 있는것으로 한다.

#### § 23399.3 (店内消費麥酒및 와인販賣特別免許)

病院, 療養所 및 休養所에 대한 店內消費麥酒및 와인特別免許는 免許 와인釀造者 또는 麥酒및 와인都賣人으로부터 購入한 麥酒및 와인을 病院, 療養所 또는 休養所의 患者 또는 施設利用者에 대해서만 販賣하거나 또는 提供하는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이 免許는 讓渡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店外消費用의 酒類販賣의 權利는 이 免許에 根基하여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은 小賣人으로부터 購入한 麥酒및 와인의 提供에 免許를 必要로하는 것으로 解釋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400 (店内消費 全 酒類販賣免許 및 酒類의 容量)

店内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는 모든面에 있어서 聯邦酒類行政法 및 그의 改正에 根基하는 規則上의 蒸溜酒標準容量에 合致하는 包裝에 包裝된 蒸溜酒를 購入하고 保有하는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는 6온스 未滿入의

包裝蒸溜酒 또는 0.1갈론入 包裝의 위스키, 진, 혹은 보드카의 購入을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01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에 根據하는 店外消費酒類販賣權)

店外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는 麥酒및 와인에 관하여 他의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免許上에 明示되는 酒類에 관하여 店外消費麥酒및 와인免許에 의해 주어지는 權利의 行사를 認定하는 것이다. 但 第24045.1條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臨時免許는 上記權利를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免許權者는 本條에서 規定하는 免許를 根據로해서 酒類入 包裝의 라베링瓶入, 包裝또는 内容物교체를 할 수가 없다.

#### § 23402 (小賣免許權者에의한 酒類의 購入)

小賣免許權者는 第24045.1條에 根基하는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臨時免許의 免許權者를 除外하고 麥酒製造者, 와인釀造者, 精溜者 브랜디製造者또는 都賣人免許의 保有者以外의者로 再販賣를 위하여 酒類를 購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403 (非變姓 알콜의 小賣販賣)

California州 藥事委員會에 登錄된 藥局또는 藥房을 除外하고 小賣免許權者는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非變姓 알콜(度數에 不問)또는 第2300 4條에 定義하는 酒類이며 容積濃度 60%를 超過하는 그의 混合物을 販賣하거나 또는 보유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非變姓 알콜은 醫師또는 外科醫의 證明書 혹은 歯科醫또는 獸醫의 免許를 갖는者の 處方箋또는 提示에 根基해서만 小賣販賣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輕罪의 罰를 진다.

#### § 23404 (販賣人의 違反行爲)

酒類販賣人이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를 幫助또는 教唆하는 것 惡意에 의해 直接또는 間接으로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為의 當事者가 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 § 23405 (酒類免許權 保有하는 株式會社의 株式의 讓渡)

(a) 本法에 根基하여 免許를 保有하는 株式會社는 California州 内에 있어서의 主된 事務所에 株式名簿를 保管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청의 檢查에 이를 提供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株式會社는 다음事項을 書面으로 廳에 報告하는 것으로 한다.

- (1) 株式會社의 10%以上의 株式을 保有하게 되는 者에의 주식의 發行또는 訂渡
  - (2) 株式會社 第312條에 根據하여 義務지워져 있는 會社役員의 變更
  - (3) 理事會構成員의 變更
- 廳에의 報告는 株式的 發行또는 訂渡 任員의 變更또는 理事會構成員의 變更이 있었던 날 以後 30日以內에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b) 本條의 適用을 받는 免許權者로서 聯邦酒類行政法 또는 內國歲入法典에 根基하여 本條에 의하여 義務지워져 있는 事項을 聯邦政府에 報告하는 것을 義務지워져 있는 者는 聯邦政府에 報告書를 提出할 때에 當該報告書의 寫本을 관리청에 提出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廳에의 報告書의 寫本提出은 本條의 充分한 遵守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 (c) 本條의 規定은 다음의 것에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California州 또는 New York市의 證券取扱所에 上場되어 있는 株式.
- (2) 受託者의 資格에 根據하여 免許의 發行을 받고 있는 은행, 信託會社, 金融機關

또는 地券會社

- (3) 證券取扱委員會에 定期報告를 행하는 것을 法律上義務지워져 있는 會社
- (d) 관리청은 本條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의 株式의 10%이상을 保有하는 者에 關하여 當該者가 免許權者이 있을 경우 當該者에 대한懲戒處分의 사유가 되는 條件이 存在 할 때는 本條의 規則에 따라 株式會社의 酒類免許를 停止 또는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405.1(有限責任 파트나 쉽에의한 관리청에의 報告)

- (a) 證券取扱委員會에 定期보고를 행하는 것을 法律上義務 지워져 있는 有限責任 파트나 쉽으로서 그의 無限責任 파트나가 本法에 根據하여 小賣免許 以外의 免許를 保有하고 있는 者는 California州內의 有限責任 파트나 쉽의 主된 事務所에 있어서 登記記錄을 保管하고 있는 것으로 하며 當該登記記錄을 관리청의 檢查에 提供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有限責任 파트나 쉽은 有限責任 파트나에의 權利의 配分 또는 讓渡에 의해 當該有限責任 파트나가 10%이상의 資本 또는 利益配分權을 保有하게 되는 경우에는 當該權利의 配分 또는 讓渡를 書面에 의해 報告하는 것으로 한다. 報告書는 權利의 配分 또는 讓渡가 있었던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廳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 (b) 本條의 適用을 받는 免許權者로서 聯邦酒類行政法 또는 內國歲入法典에 根基하여 本條에 의해 義務지워지는 事項을 聯邦政府에 報告하는 것을 義務지워진 者는 聯邦政府에 報告書를 提出할 때에 그 報告書의 寫本을 廳에 提出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當該免許權者에 의한 報告書의

寫本의 提出은 本條의 規定의 遵守를 規定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c) 관리청은 10%以上의 資本 또는 利益配分權을 갖는 有限責任 파트나가 免許權者이다라고 했을 경우 同人에 대한懲戒處分의 事由가 되는 條件이 同人에 관해 存在 할 때는 本條의 規定에 따라 有限파트나 쉽의 免許를 停止 또는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d) 本條(a)에 規定하는 登記登錄에는 現在의 有限責任파트나 및 有限責任파트나 쉽에 대한 權利의 配分을 받고 있는 者의 氏名 및 住所, 各 有限責任파트나 및 有限責任파트나 쉽에 대한 權利의 配分을 받은 者의 資本 및 利益에 대한 持分, 有限責任파트나의 持分에 대해 證書가 發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의 發行番號 및 發行年月日 그리고 取消에 의해 返還된 同證書의 取消番號 및 取消年月日을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有限責任파트나 쉽은 上記事項을 本條에 規定하는 廳의 檢查를 위하여 明確히 使用할 수 있는 樣式으로 再生可能할 경우에는 펜치카드, 磁氣레이프 또는 其他의 電算機處理를 위한 記錄器材에 의해 記錄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23405.2 (有限責任 파트나 쉽에의한 酒類免許의 申請)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관리청은 10名을 넘는 有限責任파트나를 保有하는 有限責任파트나 쉽에 대하여 免許를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免許에 대한 신청은 無限責任파트나 및 10%以上의 資本 또는 利益配分持分을 保有하는 有限責任파트나에 의해 署名을 받는 것으로 하고 免許는 이들의 者의 이름으로 發行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의 發行은 다음의 條件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a) 有限公司파트나쉽의 基本約款(그의 改定된 것도 包含된다)을 免許申請時에 관리청에 提出할 것 基本約款이 免許의 發行後 改正되었을 경우는 改正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廳에 제출할 것.

(b) 免許申請書에 署名을 義務지워지고 있는 無限責任 파트나 및 有限公司 파트나가 廳이 定하는 양식에 따라 無限責任 파트나 또는 有限公司 파트나中 어느누구가 州內 또는 州外에 있어서 酒類의 製造輸入 配送 精溜 또는 販賣免許에 대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權利를 保有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 廳에 證明을 행할 것. 관리청은 無限責任 파트나 또는 10%以上의 資本 또는 利益配分持分을 保有하고 있는 有限公司파트나가 免許權者 또는 申請者이다라고 했을 경우 同人에 대한 免許拒絶 또는 免許의 停止 혹은 取消의 事由가 되는 條件이 同人에 관하여 存在할때는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申請을 拒絶하거나 또는 免許를 停止 혹은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관리청은 無限責任 파트나가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本法 第15章의 規定에 違反하여 免許事業에 관해 禁止되는 權利를 保有하거나 또는 取得했을 경우는 本條에 根據하여 免許申請을 拒絶하거나 또는 免許를 停止 혹은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他의 酒類免許에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權利를 保有하고 있는 有限公司파트나의 有限公司파트나쉽에 대한 持分이 적다고 관리청이 判斷하는 경우에는 廳은 免許를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廳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경우에는 本項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免許에 대해 本條에 根據하는 免許事業과當該 他의 免許事業과의 사이에 있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去來行爲를 행하는 것을 禁止하는 趣旨의 條件을 附加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第4節 클럽免許

##### § 23425 (全國的 友愛組織)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美國에 있어서의 全國的 友愛組織의 支部等이며 所有者, 貸借人 또는 使用者로서 施設을 友愛目的을 위해 運營하고 있는 것. 本項에서 말하는 美國에 있어서의 全國的 友愛組織이란 美國合衆國의 20個以上의 州에서 活動하고 175個以上의 地方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20年以上繼續해서 活動을 해오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b) (a)項에 規定하는 地方組織의 會館 또는 그의 附屬建物이며 그의 資產이 當該地方組織 또는 그의 メンバー에 의해 所有되고 當該地方組織의 클럽用施設을 運營하고 있는 것.

##### § 23426 (골프클럽및 水泳 - 테니스 클럽)

本節이 말하는 클럽이란 標準골프코스와 그의 클럽하우스를 所有 또는 維持 管理하는 골프클럽, 全美體育協會標準의 水泳場과 正規의 테니스코트 2面以上이 必要한 施設 및 클럽하우스를 共히 保持하고 그의 メンバー가 每日 使用料를 支拂하고 있는 水泳-테니스클럽, 그리고 全美體育協會標準의 水泳場과 正規의 테니스코드 2面以上이 必要한 施設 및 클럽하우스를 共히 保持하는 水泳클럽 또는 正規의 테니스코드 5面以上이 必要한 施設 및 클럽하우스를 共히 保持하는 테니스클럽이며 나아가 그의 メンバー가 每日 使用料를 支拂하고 있는 水泳클럽 또는 테니스클럽도

包含하는 것이다.

#### § 23426.5 (테니스클럽)

本節이 말하는 클럽은 正規의 테니스코트 4面以上이 必要한 施設 및 클럽하우스를 共히保持하고 그의 멤버가 每日 使用料를 支拂하고 나아가 45年以上 存續하고 있는 테니스클럽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但, 商業과 事業管理法典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第11003.1條에 定義되는 不動產開發, 同法 第11004條에서 정하는 市民共同住宅計劃, 民法783條에서 정하는 콘도미니엄(分譲아파트)을 包含하는 푸로젝트, 保健安全法(8214條에서 정하는 移動式住宅에 關連하여 施設되어 있는 것을 除外한다. 本法에 根基하여 免許를 받은 클럽이 黑白 人種 宗教 家統 國籍 性別 또는 年齡을 理由로 해서 差別 또는 區別을 하거나 또는 制限을 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 § 23427 (요트클럽)

本節이 말하는 클럽은 非營利團體로서 200名以上의 요트클럽멤버를 保有하고 있는 公認의 全國的 非營利의 요트組織의 定規會員인 者로서 클럽하우스를 所有, 維持 또는 管理하는 요트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 (辯護士會)

本節이 말하는 클럽은 美國全國辯護士會에 代表者를 派遣하는 것을 認定 받고 全構成員이 州內에서 開業하는 것을 許可 또는 免許 받고 있는 資格을 保有하는 辯護士로서 正規의 멤버 100名以上을 保有하고 20年以上 存續해 왔으며 나아가 멤버를 위한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 管理 또는 維持하는 辯護士會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 (郡醫師會)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California州 醫師會에 代表者를 派遣하는 것을 認定 받고 全構成員이 州內에서 開業하는 것을 許可 또는 免許 받고 資格을 갖는 醫師로서 正規의 멤버 100名以上을 保有하고 20年以上 存續하며 나아가 그의 멤버를 위한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 管理 또는 維持하고 그의 管理를 3年以上 繼續하고 있는 郡醫師會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2 (낚시클럽 및 拳銃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公式으로 認定되는 全國낚시클럽 또는 拳銃클럽團體에 所屬하는 非營利團體이며 100名以上의 正規의 멤버를 保有하고 멤버 각자가 每年 5불 이상의 會費를 支拂하는 것이 義務지워져 있으며 나아가 클럽하우스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維持 또는 管理하고 있는 낚시클럽 및 拳銃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5 (記者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이란 非營利團體인 記者 클럽이며 멤버가 12個以上의 他州에 存續하는 類似團體와의 사이에서 그의 權利를 交換하는 것이 認定되고 正規의 멤버를 보유하며 나아가 클럽하우스 또는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고 管理 또는 維持하는 것 그리고 正規의 멤버를 保有하고 멤버를 위한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하는 非營利의 法人인 記者클럽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멤버 資格 또는 施設의 利用에 있어 人種, 宗教, 國籍 또는 性別을 理由로 하는 制限을 가하고 있는 클럽에 대해서는 當該클럽이 本條의 클럽으로서의 資格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도 免許를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28.6 (家畜業者 組合)

本節이 말하는 클럽은 非營利의 法人을 設定

하여 California州에 登錄하고 있는 家畜業者組合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組織은 社交的活動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當該組合은 그의 멤버를 위해 클럽룸을 所有, 貸借 또는 維持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 클럽은 그의 真正한 멤버 및 그의 真正한 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고 提供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3428.7 (乘馬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真正한 非營利法人이며 真正한 乘馬클럽이고 나아가 全州的인 組織 또는 聯合會의 멤버이며 正規의 乘馬場과 함께 클럽하우스를 갖는 施設을 保有, 維持 또는 管理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7 (移動式 住宅廣場)

本節中에서 말하는 클럽은 100名以上的 멤버를 保有하고 그의 멤버가 私營移動式住宅廣場內의 移動式住宅의 所有者이며 1年以上의期間, 社交클럽의 멤버로서 指定된 클럽하우스에 參加하고 있는 非營利社交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8 (California州 出身者の 會(native sonn of the golden west))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California州 出身者の 會가 所有者, 貸借人 또는 使用者로서 友愛目的을 위해 施設의 管理를 행하고 있는 招待室(parlour)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9 (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멤버와 招待客에게 하루의 食事を 提供하고 멤버를 위해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하거나 또는 維持하며 그의 클럽룸의 管理를 2年以上 維持하고 있고 나아가 會費가 각 멤버에 대해 年50불 이상인 非營利社交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0 (保安官組合)

本節에 말하는 클럽은 現役 및 退役한 保安官에 의해 構成되는 保安官組合이며 定期的으로 會合하고 會費制를 設定하며 交際目的을 위해 施設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고 있는 것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1 (消防士組合)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現役 및 退役한 消防士에 의해 構成되는 消防士組合이며 定期的으로 會合하고 會費制를 設定하며 交際目的을 위해 施設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는 消防士組合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2 (宗教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그의 멤버를 위해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며 그의 클럽룸의 管理를 8年以上 繼續하고 각 멤버에 대해 年間 25불이상을 會費로서 徵收하는 非營利의 社交宗教 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3 (航空會社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空港터미날에 있어서 航空會社가 管理하는 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클럽은 第2303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節의 規定에 根基하여 면허를 받는 資格을 갖는 것으로 한다. 第23399條 및 第23430條 件數의 制限은 當該클럽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第23434條의 規定은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를 받은 會社가 會社組織變更에 의해 吸收되는 경우 吸收하는 會社에 대한 免許의 發行을 排除하는 것으로 看做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4 (州軍의 軍人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州軍 혹은 州空軍의 士官 또는 下士官에 의해 管理되고 그의 멤버를

위해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는 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클럽은 第23430條에 根基하여 클럽면허를 받을 경우에는 免許를 받은 施設內에 있어서 真正한 클럽멤버 및 그의 真正한 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고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428.15 (美國市民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本節의 効力發生日에 있어서 存在하는 美國市民클럽의 招待室도 包含하는 것이며 當該클럽은 그의 所有者, 貸借人 또는 使用者로서 友愛目的을 위해 施設을 管理하고 酒類는 會費을 支拂한 멤버에 대해서만 販賣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6 (社交書食會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非영리의 社交書食會 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하고 當該클럽은 그의 全構成員이 現役및 退職한 專門職 및 實業家이며 定期的으로 會合을 開催하고 年間 200불을 넘는 會費를 定期的으로 徵收하고 나아가 그의 멤버 또는 그의 招待客에 대해 正規의 食事を 提供하기 위한 施設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는 것으로 한다.

#### § 23428.17 (美國 兵士集會 → FORUM)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멤버를 위해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고 있는 美國兵士 集會의 支部 또는 地方集會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클럽은 第23430條에 根基하여 클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의 免許를 받은 施設내에 있어서 真正한 클럽멤버 및 그의 真正한 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고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428.18 (勞動團體)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合衆國의 各州에 支部團體를 갖는 全國勞動者組織에 의해 公認되고 全國勞動關係法에 根基하여 20以上의 別個로 公認된 勞動團體의 代表者에 의해 構成되며 그의 全體의 構成員이 7000人以上의 勞動者團體를 包含하는 것으로하고 當該團體는 各支部團體의 代表者 또는 支部團體의 멤버 또는 그의 社交活動을 위해 使用하는 3000平方メタ 以上的 建物을 所有 또는 貸借하는 것을 必要로 하는 것으로 한다. 어느 누구에대하는것에 不問하고 그 者의 年齡, 性別, 黑白, 人種, 宗教, 家統 또는 國籍을 理由로해서 差別, 區別을 하고 또는 制限을 加하는 勞動團體는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를取得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23428.19 (핸드볼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핸드볼 또는 라켓볼 競技를 행하기 위해 結成된 私의 클럽을 包含하는 것으로 하고 當該클럽은 4面以上の 標準規格의 핸드볼 또는 라켓 볼의 코트를 設置하고 있는 建物을 所有 維持 또는 管理하고 나아가 그의 멤버를 保有하며 멤버 각자가 每月의 會費를 支拂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가 말하는 標準規格의 핸드볼 또는 라켓 볼의 코트란 全美 핸드볼 協會혹은 同等의 組織에 의해 公認된 標準코트의 基準에 合致하는 것을 말한다.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를 받은 클럽이 黑白, 人種, 宗教, 家統, 國籍을 理由로해서 差別, 區別을하거나 또는 制限을 加하는것은 違法으로 한다.

#### § 23428.20 (콘도미니엄<分譲아파트> 과 共同株式保有)

(a)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9年以上 存續하고 共同管理住宅의 所有者와 共同株式保有參加權의 所有者에 대해 발행된 會員權이 8500以上이며 會員을 위해 래크리에이

선 施設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維持 또는 管理하고 있는 真正한 非營利法人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b)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共同管理住宅의 所有者의 組合으로서 設立되고 最低 250人의 멤버를 擁立하여 12年以上 멤버와 招待客에 대하여 日日의 食事의 提供을 繼續하고 있는 真正한 非營利法人으로서 그의 멤버를 위하여 클럽룸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維持 또는 管理하고 각 멤버에 대해 年間 900불이상을 徵收하고 그의 멤버 資格要件으로서 一世帶에 대해 54歲以上의 者가 1명이상 있어야 하는 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 (c) 第23399條 및 第23430條에 의한 制限은 本條에서 規定하는 클럽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d) 人種, 黑白, 主義, 宗教, 國籍 또는 性別을 理由로 해서 멤버 資格을 認定하지 않고 혹은 便宜나 서비스를 提供하지 않는 클럽에 대해서는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는 發行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28.22 (國際交流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外國人과 美國合衆國市民과의 사이의 文化的結束 및 相互理解를 促進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는 非營利法人이며 正規의 멤버로서 1만명이상을 保有하고 각 멤버가 會費를 支拂하며 友愛目的을 위해 施設을 所有 또는 貸借하여 管理 또는 維持하는 것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클럽은 第23430條에 根基하는 免許를 發行받았을 경우에는 免許를 받은 施設內의 消費를 위하여 클럽의 真正한 멤버 및 그의 真正한 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고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人種, 宗教, 國籍 또는 性別을 理由로 해서 會員資格

또는 그 施設의 利用에 관해 制限을 행하는 클럽에 대해서는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28.23 (地方 郵便配達員 組合)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美國合衆國의 各州에 支部를 가지고 있는 全國 勞動者 組織에 의해 公認되어 全國 勞動關係法에서 定義되는 1500名以上의 멤버 또는 그의 兩者가 그의 社交活動을 위해 利用하는 5000平方 메타以上의 建物을 所有 또는 貸借하는 地方郵便配達員組合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어느 누구에게 대하는 것인가에 不問하고 年齡, 性別, 黑白, 人種, 宗教, 家統 또는 國籍을 理由로 해서 差別 또는 區別 혹은 制限을 행하는 地方郵便配達員組合에 대해서는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를 받은 클럽은 免許를 받은 施設以外의 消費를 위하여 酒類의 販賣를 행해서는 안된다.

### § 23428.24 (同一出身國의 出身者의 클럽)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350名以上의 멤버를 保有하고 所有者, 貸借人, 또는 使用者로서 멤버를 위해 施設을 運營하고 5年以上 存在하며 멤버간의 社交關係를 育成發展시키며 出身國의 評價를 向上시켜 美國社會秩序에의 寄與를 행하는 것에 의해 멤버의 출신국에 대한 궁지를 涵養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真正한 非營利의 社交團體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를 받은 클럽이 黑白, 人種, 宗教, 家統, 國籍, 性別 또는 年齡을 理由로 해서 差別 또는 區別을 하거나 혹은 制限을 加하는 것은違法으로 한다.

### § 23428.25 ("이달고"協會)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社會 및 教育的條件改善을 위한 教育의 向上 近隣關係의 緊張의 緩和

福祉制度의 負擔의 輕減 差別의 撤廢 기타의 慈善的事由를 目的으로하는 團體인 “이달고”協會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이달고”協會는 第32級의 郡에 소재하며 會費를 支拂하는 멤버를 保有하고 나아가 그의 멤버를 위하여 클럽을 所有 貸借또는 維持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를 받은 클럽이 黑白, 人種, 宗教, 家統, 國籍, 性別또는 年齡을 理由로 해서 差別또는 區別을 혹은 制限을 加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 § 23428.26 (財產所有者 組合)

本節에서 말하는 클럽은 2500名以上의 멤버를 保有하는 非營利의 財產所有組合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 組合은 1975년 10월 1일 현재 5年間 繼續하고 있으면서 所屬하는 社會를 위해 志願活動에 從事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면허를 받은 클럽이 黑白, 人種, 宗教, 家統, 國籍, 性別또는 年齡을 理由로 해서 差別또는 區別, 혹은 制限을 加하는 것은 違法으로 한다.

#### § 23429 (憲法上의 定義)

本節에 있어서 定義되는 클럽은 憲法 第20條2項에 規定하는 真正한 클럽으로 한다.

#### § 23430 (클럽 免許)

관리청은 本節에서 定義하는 각클럽에 대해 1件의 免許를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 § 23431 (클럽 免許에 根基하는 權利)

클럽면허를 保有하는자는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에서 認定받고 있는 모든 權利를 行使할 수가 있다. 但, 免許를 받은 施設內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當該클럽의 真正한 멤버 및 그의 真正한 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고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클럽면허는 讓渡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本法 第5章2節의 規定은 클럽면허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 § 23432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를 讓渡한 클럽)

1947년 4월 1일以前에 관리청으로부터 新規의 店內消費 全 酒類販賣免許를 받고 當該면허를 第3者에게 讓渡한 者는 그의 讓渡의 날 以後 적어도 1年間은 클럽 許可를 申請하는 資格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33 (골프클럽에대한 店外消費酒類販賣免許)

관리청은 400名以上의 真正멤버를 保有하며 正規의 골프코스와 함께 클럽하우스를 所有 貸借또는 管理하고 나아가 當該施設의 管理를 60年以上 繼續하고 있는 골프클럽에 대해 店外消費酒類販賣免許를 附與할 수가 있다. 但, 當該免許는 真正클럽멤버 및 真正의 招待客에 대해서만 店外消費酒類販賣免許權者가 販賣할 수 있는 酒類를 再販賣를 위한 것이 아니고 消費者를 위해서만 販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는 讓渡할 수 없다.

本法第5章 2節의 規定은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에 適用하지 않는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에 適用하지 않는다. 本條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免許手數料는 第23320條에서 規定하는 店外消費全 酒類販賣免許의 免許手數料와 같은 것으로 한다.

#### § 23434 (非營利組織 志願活動)

- (a) 本法中의 他의 規定에 關係없이 本條의 効力發生日以後는 非營利組織이 아닌 클럽에 대해 新規로 클럽면허를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 本條의 効力發生日以後는 當該非營利法人이 그의 所屬하는 社會를 위해 그의 役割

로서 적어도 무엇인가의 志願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以後制定되는 法律에 根基하여 非營利法人에 대하여 클럽면허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35 (멤버數 및 存續期間의 制限)

1980年 1月 1日以後는 100名以上의 멤버를 갖지 않고 1年以上 存續하고 있지 않는 클럽組織 또는 組合에 대해서 新規로 클럽면허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437 (店外消費酒類販賣權에 대한 制限)

本法中 他의 規定에 關係없이 本節에 根基하여 발행된 클럽면허는 그의 免許權者에 대해 店外消費酒類販賣權을 附與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한다.

### 第 5 節 退役軍人 클럽免許

#### § 23450 (退役軍人)

本節에서 말하는 退役軍人이란 美國陸軍 海軍 海兵隊 海上稅關監視隊에서 勤務한者 또는 戰時中에 美國赤十字 또는 陸海軍 看護員團의 一員으로서 美國軍隊의 遠征에 있어서 現役看護員으로 勤務한者 혹은 1940年 9月 16일부터 1941年 12月 7일까지의 期間에 上記의 어느것의 勤務에서 不名譽의 事由에 起因하지 않고 除隊한者를 말한다.

#### § 23451 (聯邦議會에 의한 公認團體)

聯邦議會에 의해 愛國的 友愛의 또는 博愛의 目的때문에 公認된 退役軍人만에 의해 構成되는 團體의 退役軍人 만에 의해 組織되고 있는 支部分會 캠프, 其他의 地方單位이며 所有者 또는 貸借人 혹은 占有者로서 上記目的을 위해 施設을 1年以上管理하는 것은 憲法120條 22項 및

本法上의 真正한 클럽으로 한다.

#### § 23452 (退役軍人클럽免許)

관리청은 第23451條에서 規定하는 支部 分會, 캠프, 其他의 地方單位에 대해 이들 支部等이 클럽을 維持하고 있는 施設에 관하여 1件의 退役軍人 클럽免許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452.5 (退役軍人 記念團體)

관리청은 愛國的 友愛의 또는 博愛的目的을 위해 退役軍人만에 의해 組織되고 18000名以上的 正規의 멤버를 保有하며 클럽하우스를 3年以上 繼續하여 所有, 貸借, 維持 또는 管理하고 있는 非營利의 私的法人 退役軍人記念團體에 대해 1件의 退役軍人 클럽 免許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453 (免許에 根據하는 權利)

退役軍人 클럽免許를 받은者は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에 根據하여 認定받는 모든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된 施設內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當該退役軍人組織의 真正한 멤버 및 그의 真正한招待客에 대해서만 酒類를 販賣하거나 提供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退役軍人 클럽免許를 발행받거나 또는 그의 更新을 받은者は 免許를 讓渡할 수가 없다. 本法 第5章 2節의 各規定은 退役軍人 클럽免許에 適用되지 않는다.

#### § 23454 (被用者의 固定給與)

退役軍人 클럽免許權者의 멤버 및 그의 任員, 代理人 또는 被用者は 當該免許클럽의 正規會合에 있어서 멤버에 의해 결정되거나 또는 그의 管理機關에 의해 決定된 一般財源에 의한 紿與의 全額을 超過해서 紿與 또는 其他의 報酬로서 免許權者 그의 멤버 또는 招待客에 대한 酒類의

提供 또는 販賣에 의해 得한 利益을 直接 또는  
間接의으로 取扱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455 (取消)

관리청의 判斷에 의해 免許權者가 真正한  
클럽으로서의 運營을 中止한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에는 廳은 何時라도 本節에 根基하여 발행  
된 免許를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한사람이 방심하면 우리모두 불행초래